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슬기로운

재활용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생활

분리배출표시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란?

“재활용의무생산자(제품·포장재 제조업자, 수입업자,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시행 2003.1.1.)

- 생산자책임원칙에 따라 재활용을 해야 하는 제품·포장재를 발생시킨 생산자가 제품의 생산-판매-소비-폐기-재활용까지 재활용체계의 전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체계”를 도모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6조]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1. 포장재

- ① 종이팩
- ② 금속캔(철, 알루미늄)
- ③ 유리병
- ④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2. 제품

- ① 전지류
- ② 타이어
- ③ 윤활유
- ④ 형광등
- ⑤ 수산물 양식용부자
- ⑥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⑦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 ⑧ 합성수지재질의 필름류 5종(PVC 제외)
- ⑨ {22년 신규품목} 산업용 필름(PE), 교체용 정수기 필터
- ⑩ {23년 신규품목} 안전망(PE, PP),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 관,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PS),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발광다이오드 조명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상세내역

구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포 장 재	종이팩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
	유리병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금속캔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등의 포장재 (※ 종이팩의 경우,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전제품의 포장재 (단,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유독물제품은 제외) ※ 부동산·브레이크역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쇼핑백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제 품	전지류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1차전지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타이어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은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조명제품	가.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 포함) 나. {23년 신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수산물 양식용 부자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발장
	PVC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 필름류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에서 포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15종	{22년 신규} 산업용 필름(PE), 교체용 정수기 필터 {23년 신규} 안전망(PE, PP),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 관,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비덕재, 건축용 단열재(PS),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사항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인 경우, 출고·수입실적서 제출만 해당)

1.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 전년도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출고·수입실적서) 제출

- 제출기한 : 매년 4월 15일
- 제출대상 :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분담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음)
- 제출방법 :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
- 제출서류 : 전년도 EPR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량 또는 수입량 및 개당 무게 증빙서류 등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2. 재활용 의무이행 방법

■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당해 연도에 납부

- 분담금 : 재활용의무량(kg) × 분담금 단가(원)
- 분담금 공제 방법 : ①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 ② 위탁하여 회수·재활용
※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자사 회수·재활용실적에 한함)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3항]

🔍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구분	제조업자		수입업자	
	매출액	출고량	수입액	수입량
종이팩		4톤 미만		1톤 미만
유리병		10톤 미만		3톤 미만
금속캔 (알루미늄캔, 철캔)		4톤 미만		1톤 미만
합성수지류	10억 미만	4톤 미만	3억 미만	1톤 미만
발포합성수지		0.8톤 미만		0.3톤 미만
합성수지재질 필름류 제품 5종 (PVC제외)		4톤 미만		1톤 미만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15종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10톤 미만		3톤 미만

※ 재활용의무 면제 여부는 전년도 규모로 산정하며 제품군의 경우 면제 기준 없음
(필름류 제품 5종은 제외,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15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 제조업체는 매출액·출고량, 수입업체는 수입액·수입량 기준을 적용(법인은 합산 규모 적용)하며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재활용의무가 있으면 출고·수입량을 합산하여 의무량 산정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

🔍 재활용부과금 [재활용의무 미이행시 발생]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100분의 30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부과

-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의무미이행량(kg)* x 기준비용(원) x 재활용비용산정지수 x 미이행가산률

* 재활용의무미이행량 = 재활용의무량(출고수입량 x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실적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9조]

※ 신규업체는 과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및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최대 5개년) 발생 가능

[근거 : 국가재정법 제96조, 환경부 예규 제674호 제22조]

🔍 위반시 제재사항

-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100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방법

1. EPR 대상 제품·포장재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2. 작성기준



• 제조업자(국내 OEM 주문자 포함)
국내 소비용으로 출고된
제품·포장재

※ 증빙서류 : 제품수불부, ERP자료 등



• 수입업체(관세납부자)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수입(통관기준)의 제품·포장재

※ 증빙서류 : 수입신고필증,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입실적증명서 등

3. 제외대상

①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 증빙서류 : 수출신고필증, 수출인정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관세환급신청서, 외화획등용 구매확인서 등

②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한 경우에만 해당

③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

- 증빙서류 : 폐기물인계서, 세금계산서, 계량표, 폐기제품목록 등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품목코드

구분	기재 예시	시스템 코드	출고 단위	구분	기재 예시	시스템 코드	출고 단위
포장재	종이팩	0110	kg	제품	수은전지	0510	g
	유리병(뚜껑테일체형)	0210	kg		산화은전지	0520	g
	유리병(뚜껑테분리형)	0220	kg		니켈카드뮴전지	0530	g
	철캔(뚜껑일체형)	0310	kg		리튬전지	0540	g
	철캔(뚜껑분리형)	0320	kg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550	g
	알루미늄캔(뚜껑일체형)	0330	kg		니켈수소전지	0560	g
	알루미늄캔(뚜껑분리형)	0340	kg		타이어	0610	kg
	PET병-무색단일재질	0410	kg		윤활유	0710	ℓ(리터)
	PET병-유색단일재질	0411	kg		형광등	0910	개
	PET병-복합재질	0412	kg		수산물 양식용 부자	1010	kg
	발포합성수지(PSP제외)	0420	kg		곤포사일리지용필름	1110	kg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PSP)	0430	kg		김발장	1210	kg
	단일복합재질 PVC	0440	kg		합성수지재질 필름류	0460	kg
	기타 단일재질 용기류·트레이	0450	kg		산업용 필름	1310	kg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포장재	0460	kg		교체용 정수기 필터	1410	kg
	전기기기류의 필름·시트형 포장재	0470	kg				
	윤활유 부동액 브레이크액의 용기류	0480	kg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포장재 (pp 마대, 비료사료포장재)	0490	kg					

※ 0460 코드는 필름구분 필수 입력
예) 포장재로 사용된 경우 "포장재", 제품인 경우 "(제품)에어캡" 등

🔍 헛갈리는 용어 정리

■ 분담금 vs. 부과금

- 분담금 :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
(분담금 납부 = 재활용의무 이행)
- 부과금 :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부과하는 금액
예) 분담금 납부 (o) -> 재활용의무 이행 (o) -> 재활용부과금 (x)
분담금 납부 (x) -> 재활용의무 이행 (x) -> 재활용부과금 (o)

■ 비대상 vs. 규모미만

- 비대상업체 : EPR 대상 제품·포장재를 수입·제조(포장재를 이용한 판매 포함)하지 않는 업체
⇒ 재활용의무생산자 (X), 출고수입실적 제출 의무 (X), 분담금 (X)
- 규모미만 업체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업체
⇒ 재활용의무생산자 (o), 출고수입실적 제출 의무 (o), 분담금 (X)

■ 의무생산자 vs. OEM생산자

- 의무생산자 : EPR 대상 제품·포장재 수입·제조(포장재를 이용한 판매 포함)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
- OEM생산자 :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에 따라 타사 브랜드의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업체(국내만 해당)
※ OEM주문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나, OEM생산자도 타사 실적 제출 필요

■ 유리병 뚜껑테 일체형 vs. 분리형

- 뚜껑테 일체형 : 뚜껑테가 없거나, 개봉 후 테가 유리병 목에 남지 않는 것
- 뚜껑테 분리형 : 뚜껑을 개봉하였을 때, 테가 유리병 목에 남는 것



뚜껑테 일체형



유리병



뚜껑테 분리형

■ 금속캔 뚜껑일체형 vs. 분리형

- 뚜껑일체형 : 뚜껑을 반복해서 열고 닫도록 사용하게 설계된 경우, 뚜껑과 몸체가 분리되더라도 별도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원터치 분리형 뚜껑이라도 별도로 분리배출표시를 하여 분리수거가 가능한 경우)
- 뚜껑분리형 : 뚜껑부에 손잡이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오픈 시 금속뚜껑과 몸체가 분리되어 열리는 경우



뚜껑 일체형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 캔)



뚜껑 분리형

■ PE병T vs. PET 단일재질 용기

- PET병 : 용기 중 나선형의 스크류가 있는 목(몸통에서 입구쪽으로 좁아지는 모양을 가진것)과 마개가 있는 모양
- PET 단일재질 용기 : 목과 마개가 없으며, 내용물 또는 포장물품을 넣을 수 있는 그릇 형태의 포장 용기



PET병



PET



PET 단일재질 용기

02 포장재 재질·구조평가 제도 소개

포장재 재질·구조평가제도란?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지속적인 생산·유통으로 폐기물 회수·선별·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율 저하 및 재활용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시행 2019.12.25.)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2 및 제9조의3]

🔍 평가제도 개요

평가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인 경우 평가의무 면제)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에 대해 재질의 종류, 해당 색상여부, 몸체와의 분리 용이성 등을 평가
평가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등급("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미이행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 -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평가를 받는 경우 - 등급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를 하는 경우

🔍 평가 방법 및 표시 절차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재질·구조 단위로 자체 평가 후, 평가결과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승인 신청



- 신청방법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에 자체평가 결과와 증빙서류 제출
- 평가방법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2-44호)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평가
- 제출서류 : 해당 포장재에 대한 재질·구조 증빙서류(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육안판정결과서, 사진자료, 시험성적서 등)
- 소요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보완 통보 시 영업일기준 10일 이내 보완)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인 경우 공단의 검토없이 자동승인

■ 공단 평가 확인 후, 평가 결과 표시(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의무 표기)

- 표시기한 : 6개월 이내(필요시 9개월까지 연장신청 가능)

의무 표기

'재활용 어려움' 등급*



선택 표기

'재활용 최우수' 등급

'재활용 우수' 등급

'재활용 보통' 등급

- 기타사항: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상¹⁾ 기록·보관
 -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²⁾ 제출(매년 4월 15일까지)
 - 1)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
 - 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으로 등록하는 경우 같음 가능

🔍 등급평가제도 FAQ

■ 법적용 기준

구분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평가 신청 기준 (제조·수입 또는 판매 허가 이전)	제조전	수입통관 전	판매 전
표시 기준 (평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제조일	제조일	판매일

■ 동일한 재질·구조 포장재의 평가방법

- 재질의 세부사항이 다르더라도 평가단위가 동일하게 분류되는 경우(평가결과 동일 체크리스트) 동일한 재질·구조로 인정되고, 이 경우 대표품목 1건만 평가 신청하고 제품 목록으로 관리

■ 등급표시 의무 면제 대상 포장재

- 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 포장재
- 과실주 및 위스키 포장에 사용된 유리병 등 제품 기능상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포장재로 인정된 경우

🔍 사용금지 포장재에 대한 재질·구조 개선 및 중단 명령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위반한 의무생산자에게 1년(연장 가능)의 범위 내에서 개선 명령 조치, 개선 명령 미 이행시 제조·수입·판매 중단 명령 조치
- 제조·수입·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단 명령을 같음한 과징금 부과(10억 이하)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5 및 시행령 제7조의2]

사용금지 포장재(개선 대상)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	비고
PVC재질의 포장재 (폴리염화비닐리덴 포함)	PVC재질을 사용하여 접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를 포함
유색 PET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에 한함
열알칼리성 수용액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가 사용된 PET병	

※ 2019. 12. 25.부터 사용금지(별도 계도기간 없음)

사용금지 적용 예외 대상(사용가능)

개선 대상 적용 예외(사용가능 제품·포장재)
· 몸체와 분리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
· 수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
· 압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
·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한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햄류·소시지류(어육소시지 포함)
· 축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참고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9-244호) 제3조제2항

03 분리배출표시제도 소개

분리배출표시제도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4조]

🔍 분리배출표시제도 개요

■ 표시대상 (근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자원순환보증금 대상 용기 제외)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분리배출 표시
 - ※ 위반시 제재사항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4호)
 -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근거: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

기준일	· 제품의 제조일
표시방법	· 인쇄, 각인 또는 라벨
표시크기	· 가로, 세로 최소 8mm 이상(표시재질 문자제외)
표시색상	·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표시위치	·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다중포장재	·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

■ 분리배출표시의 적용예외 (근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및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구분	적용예외 대상
분리배출표시의 적용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표시 포장재(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호 나목 ·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용기, 트레이류)”, “10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류)”인 경우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 분리배출표시 도안

구분		표시도안											
합성수지 재질	무색페트												
	플라스틱												
	비닐류												
캔류													
종이	종이		※ 분리배출마크 표기 의무 없음(지정신청 · 승인 후 도안 사용가능)										
	종이팩												
유리병													
도포·첩합 등													

- ※ 합성수지재질 중 용기류인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필름·시트형인 경우 비닐류로 구분
- ※ OTHER :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 글리콜변성PET수지(PET-G)가 포함된 재질,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 사용된 경우
- ※ 도포·첩합 등 :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발포합성수지 제외) 제품·포장재의 구성부분에 타 소재·재질(금속, 생분해성 수지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부착된 것으로서, 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도안파일 다운로드

■ 일괄표시

-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이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

구분	구성	기본도안	일괄표시
예시 1	주요부분 : 무색페트 뚜껑 : HDPE 라벨 : PP		 뚜껑:HDPE/라벨:PP
예시 2 (수입제품)	내포장재 : 유리 외포장재 : 종이*		 내포장재:유리

*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 가능(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인 경우 별도 지정승인 절차없이 표시 가능)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연락처

재활용의무생산자 출고·수입실적 | 02-3153-0570~9, 5404, 5405

재활용수탁자 회수·재활용 | 02-3153-0563~4, 0566, 0568, 0503, 5401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연락처

	공제조합명	대상품목	전화번호
포장재군	한국포장재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포장재, 필름류 제품 5종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02-6948-8700
제품군	한국농수산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비료사료 포장재, PP마대,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02-6952-3270
	한국운할유 공업협회	운할유, 운할유 용기	02-2068-6043
	한국전지 재활용협회	전지	02-6954-0666~8
	한국조명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형광등	02-3785-2883
	대한타이어 산업협회	타이어	02-551-1901~7